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137)

2023. 09. 06.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137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3년 08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 II.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출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안 제5조제2항)  
나. 용어 정비 및 조례의 기존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호 및 제2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6. 8. ~ 6.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하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제출배경

-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sup>1)</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동법 제 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함.
-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었음.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2009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시작됨.
- 2023년 1월 기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인원은 약 40,000명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약 48,000백만원임.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어 왔으나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음.

**<표> 2023년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현황**

| 구 분  | 참전명예<br>(참전유공자) | 보훈명예*<br>(애국지사) | 보훈예우<br>(민주화·특수<br>임무) | 생활보조<br>(저소득층) | 독립유공생활지원<br>(저소득독립유족) |
|------|-----------------|-----------------|------------------------|----------------|-----------------------|
| 예산액  | 48,000백만원       | 52백만원           | 960백만원                 | 11,040백만원      | 8,904백만원              |
| 월 인원 | 40,000명         | 2명              | 800명                   | 4,600명         | 3,710명                |
| 월지급액 | 1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지급주체 |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 보훈명예수당 :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4백만원 포함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월 10만원으로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표>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br>② 수당 지급액은 월 <u>10만원</u> 으로 한다.<br>③ ~ ⑤ (생략) |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br>-----<br>---- <u>범위</u> -----<br>-----<br>-----.<br>② ----- <u>15만원</u> -----<br>-----.<br>③ ~ ⑤ (현행과 같음) |

- 국가보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17개 광역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광역단체 지급액 평균은 9.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광역단체 참전수당 월 지급액 현황<sup>2)</sup>**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4만원 | 10만원 | 14만원 | 15만원 | 3.3만원 | 6만원 |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
| 6만원  | 3만원  | 2만원  | 3만원  | 10만원   | 12만원 | 22만원 |      |       |     |

\*경기의 경우, 연 1회 40만원 일시 지급

- 참전수당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도 기초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2) 국가보훈부 보도자료(2023.6.28.) ‘보훈부,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 위한 지자체와 협력방안 추진.

(광주, 경남, 울산, 제주)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80세 도래 시 차등 지급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각각 수당을 지급 받게 되며, 23년 기준 국가보훈부 지급금액은 3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별 지급하는 수당이 달라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최대 2배의 금액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3)</sup>

### <표> 서울시 자치구별 참전수당 지급 현황

(23.8월 기준)

| 자치구명       | 송파 | 강남 | 영등포 | 용산, 성동, 광진, 마포, 서대문, 강동,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중랑, 도봉, 동작 | 중구, 은평, 서초, 종로, 성북, 동대문, 강북, 노원 |
|------------|----|----|-----|---|---------------------------------|
| 월 지급액 (만원) | 10 | 8  | 6   | 5   | 미지급                             |

- 서울시의 참전수당은 다른 광역단체 지급액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참전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자치구별 상이한 점 및 '19년부터 참전수당이 10만원에서 동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서울시의 참전유공자 수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최근 3년간 추이에서는 연간 평균 6.4%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서울자치신문(23.07.19.), “서울지방보훈청과 서울시·25개 자치구, 보훈예우 협력 논의”.  
<https://www.on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7917>. 접속일 : 2023.08.18.

**<표> 참전유공자 수 변동추이 (최근 3년)**

(단위: 명)

| 구 분   | '20.3월 | '21.3월            | '22.3월            | '23.3월            |
|-------|--------|-------------------|-------------------|-------------------|
| 유공자 수 | 51,728 | 48,576            | 45,527            | 42,488            |
| 전년 대비 | -      | △3,152<br>(△6.1%) | △3,049<br>(△6.3%) | △3,039<br>(△6.7%) |

- 본 조례개정안에서 제안한 참전수당의 인상은 24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으며, 관련 인상 금액을 적용할 경우 첫째 추가적인 소요 예산은 19,392백만원으로 예측되나, 매년 참전유공자 수가 감소하는 추이를 반영했을 때 점차 추가 소요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표> '24~'28년 참전명예수당 연간 추가지급액 비용추계**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합계<br>( '24~'28) |
|------------------------------------|--------|--------|--------|--------|--------|--------|------------------|
| 지급인원                               | 40,000 | 37,440 | 35,044 | 32,801 | 30,702 | 28,737 | 164,724          |
| 소요예산                               | 48,000 | 67,392 | 63,079 | 59,042 | 55,264 | 51,726 | 296,503          |
| 기존 연 지급액<br>48,000백만원을<br>제외한 추가비용 | -      | 19,392 | 15,079 | 11,042 | 7,263  | 3,726  | 56,502           |

- 또한,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였음. 이는 21년 동 조례 개정을 통해 3조의 1항 및 2항<sup>4)</sup>이 삭제된 것에 따른 것으로, 조례정비를 위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하겠음.

4) 삭제조문내용 “제3조(지원대상)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p> <p>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u>말소, 타 시·도</u> 전출한 경우</p> <p>2. <u>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u></p> | <p>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br/>-----<br/>-----<br/>-----.</p> <p>1. -----<br/><u>주민등록이 말소, 타 시·도로</u><br/>-----</p> <p>&lt;삭 제&gt;</p> |

### 3 종합의견

- ‘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통합하고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음.<sup>5)</sup>
- 본 조례개정안은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난 ‘19년 이후 동결된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단, 2023년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명칭변경을 반영해 일부 추가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5) 송샘(2021). “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 연구:공헌 유형별 보훈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0(4). 한국보훈학회.